

졸업에 관한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개정 2013. 11. 15. 개정 2014. 3. 1.
개정 2017. 5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학칙 제51조에 의한 졸업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제2조(졸업자격) 졸업자격(졸업사정 내용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졸업 최저 이수 학점(2년제 80학점이상, 3년제 120학점 이상, 4년제 136학점 이상) 이상을 취득한 자 <개정 2013.7.1.>
2. 학부(학과) 전공별로 지정한 교과영역별(교양, 전공)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한 자

제3조(졸업사정) 학칙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졸업사정은 졸업 자격을 최종심사하고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.

- ① 시기 : 졸업예정일 2주 이전에 실시한다.
- ② 주관 : 졸업사정위원회는 교학처장(부위원장)이 실무 주관하고 위원장은 총장 (또는 부총장)으로 한다. 사정위원은 학부(학과)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3.1.>
- ③ 내용 : 위 제2조에 의거한 졸업자격을 심사하고, 학위수여를 결정한다. 아울러 성적 우수졸업생을 확정한다.
- ④ 절차 : 교학처에서는 졸업사정대장을 각 학부(학과)장에게 발송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졸업사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정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각 학부(학과)에 통보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
제4조(조기졸업) 고등교육법 제4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 년한을 4분의 1까지 단축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. 단 3년제 학과에 한하여 시행한다.

① 다음의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에 조기졸업을 신청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1.>

1. 입학 후 5학기를 이수한 자로서 학칙 제51조에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.35이상인 자
2. 계절수업 이수자, 편입학자, 재입학자, 학적변동(군 휴학 제외)이 있는 경우, 학칙 제70조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<개정 2017.5.23.>

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을 경유, 교학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3.1.>

[본조신설 2013.11.15.]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